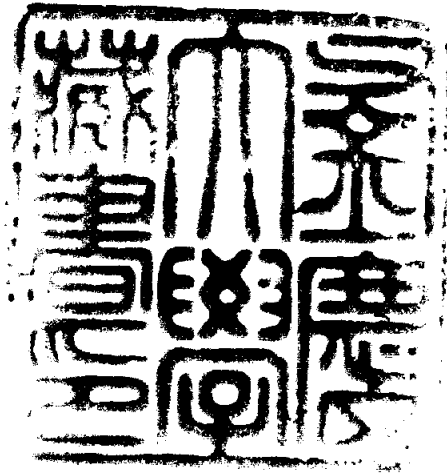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個人企業의 法人轉換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泳 炳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2月

釜慶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稅務管理專攻

金 鍾 鳴

金鍾鳴의 經營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12月 26日

主 審 經營學博士 金 泰 容



委 員 經營學博士 李 煥 根



委 員 經營學博士 朴 泳 炳



목 차

Abstract.....	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4
제1절 법인의 본질과 법인전환의 필요성.....	4
제2절 법인전환의 유형.....	7
제3절 법인전환 방법과 시기의 선택.....	10
제4절 선행연구.....	17
 제3장 법인전환 절차와 조세지원제도.....	 21
제1절 법인전환 절차.....	21
제2절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40
 제4장 법인전환 효과분석.....	 57
제1절 개인기업과 법인가업의 조세제도 차이.....	57
제2절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의 비교.....	63
제3절 법인전환 후 세금절감 효과분석.....	73
 제5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제1절 법인전환 효과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제2절 조세지원제도활용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0
제3절 법인전환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제6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표 목 차

<표 1> 조세지원의 수혜여부에 따른 법인전환 방법	8
<표 2>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하는 기준	13
<표 3> 세부담액 산출내역	17
<표 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일정표	32
<표 5> 중소기업의 범위	37
<표 6> 조세지원제도 변천의 주요 내용	41
<표 7>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세액감면·세액공제	49
<표 8> 법인세율표 (영리법인)	60
<표 9> 종합소득세율표	60
<표 10>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61
<표 11> HIS산업의 대차대조표	65
<표 12>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등록세와 관련 조세의 산출	68
<표 13>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취득세와 관련 조세의 산출	68
<표 14>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관련 조세의 산출	69
<표 15> 차량등록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조세의 산출	70
<표 16>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액 비교	71
<표 17> 사례 1의 세금부담 비교	74
<표 18> 사례 2의 세금부담 비교	76
<표 19>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81
<표 20>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부진 이유	81
<표 21> 법인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를 느낀 사항	83

A Study on Converting Effect from a Private Firm to a Corporation

Kim, Jong-Myung

*Majoring in Taxation Managem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① to review the legal provisions and actual cases regarding the taxation on the conversion from a private firm to a corporation, ② to examine converting effects of tax savings from the conversion by using a case study of two firms, ③ to factor out any legal loopholes and other problems related to the conversion, and ④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conversion.

Currently, the conversion process comprises of three types: investment in kind of private company, business assumption, and merger among small companies. These three converting methods differ from each other in terms of applicable cases, procedural differences and taxation on conversion. The owner of a private firm who want to convert his business to a corporation determines a proper method considering its asset size and business type.

Based on the case study of two private firms which had converted to

a corporation, the converting effects on tax savings are 40% for the first firm and 26% for the other firm. This result shows that it is beneficial for a private firm to convert to a corporation. Even with this advantage, currently, the procedural complexity and a long period of time to complete the conversion are major problems. For inducing conversion to a corporation instead of continuing private firm, preferential tax treatment are stated in tax regulation. However, the tax deduction may be applied only for the company fulfilled complicated terms and conditions for converting. Those procedural difficulties have long blocked the conversion of private firm to corporatio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revised laws and regulations for efficient conversion. Especially, it is very notable improvement that most of the differences in tax deduction on each converting method have been eliminated and the tax benefit is almost the same to each other. However, in addition to developments of laws and regulations to encourage the conversion, ① simplifications of documentation process and publicity activities are also required; ② the special tax for the improvement of farm and fisheries should be exempt or the tax rate on that tax should be reduced below 10%; and ③ the valuation method of real estate is to be changed, etc.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영속성을 유지하며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며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경영이념인 기업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제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조직형태는 납세주체의 측면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기업과 기업의 소유자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기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는 소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회사설립 절차가 간단한 개인기업으로 출발을 하지만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게 되면 공동의 의사결정이 필요로 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기업의 본질이나 목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기로는 전문경영인의 활용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위험 분산과 기업의 대외적 신용도의 높임과 그리고 개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음에도 많은 개인중소기업주들은 자신의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보다 더 중소기업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며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정보의 미흡으로 결정적 의사결정을 못하고 미온적 태도로 기업을 영위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촉진시키는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인전환방법에 대한 조세효과를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여 봄으로써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효과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국세청을 비롯한 각종단체에서 발간한 간행물 및 국내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 등의 문헌을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각종 조세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계획한 상태에서 법인전환 유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는 각종 통계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으므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실제 법인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례의 대상이 한 개 내지 두 개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법인전환 방법별 세제상의 우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조세부담효과를 비교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법인으로 전환한 두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전환 후 세금절감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법인전환 유형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방법별 조세부담액을 비교하고, 또한 법인전환 후 세금절감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찰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제2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1절 법인의 본질과 법인전환의 필요성

1. 법인의 본질

법인이란 자연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부여받은 독립된 단체나 재산을 의미한다. 민법상의 법인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법상의 법인은 준칙주의에 의한다.¹⁾

법인에 대한 학설은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제설이 있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천부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적 수요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법인이 실제하고 있는 것 같이 법에 의제한 것이다. 과세측면에서는 법인을 통해 얻어진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세와 주주단계에서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론이다.²⁾

법인실제설은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법적·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이며 독립된 영속적 생명을 가지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인 주주의 개별의사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법적·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과세측면에서는 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세와 주주에게 배당되어 소득구성단계에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1) 박영사, 경제학 대사전, 1980. 2, p.648.

2) 최명근, 법인세법, 세경사 1998.3, p.47.

2. 법인전환의 필요성

기업이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유기체로서 그 기업형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출자자본이 필요치 않고 기업의 이윤도 독점함과 동시에 기업의 비밀 유지도 용이하며 법적인 규제가 많지 않은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일정수준이 되면 소득세 부담의 증가와 개인기업주의 관리능력과 자본조달이 용이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영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경영능력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에서 생긴 이윤을 독점할 수 있으며 어긴한 이윤의 기업내의 유보도 강제되지 않으므로 축적된 이윤은 조건없이 사외 유출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이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기업활동이 가계활동과 혼용되어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조달과 노동력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기업의 성격상 사회적으로부터 받는 신용도가 적다. 또한 개인기업에서는 기업가가 혼자 기업활동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은 지게 되므로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의 분산이 불가능하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개인기업주의 개인사정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의 유지발전은 물론 존폐마저 개인기업주에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기업은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고액의 조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서 사업의욕의 감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며, 더욱이 개인사업자가 고령일 경우 상속세를 의식하여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연속성을 저해

할 뿐 아니라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개인기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인의 결합이 필요하게 되고, 사회 경제규모의 확대에 적응하며 이익의 증대를 더욱 촉진시킬 조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이를 가계와 엄격히 분리하여 경영할 경우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기업의 형태는 가계와 기업의 혼용이 일반적이어서 합리적인 기업경영이 곤란하다.

위에서 열거한 개인기업의 단점을 극복한 법인기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³⁾

첫째, 기업의 유지, 발전의 우위이다.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기업가의 교체, 사망 등 기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법인기업의 경우는 출자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기업은 전문 경영인의 활용을 통하여 기업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둘째, 기업신용도의 제고이다. 기업의 대외 신용도 및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신용도가 높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를 둔다. 기업의 대외 신용도는 외부로부터 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자본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이다. 법인기업은 복수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 자본조달은 개인기업주의 자기자본과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두 가지 경로로 형성된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개인기업보다는 대외 신용도가

3) 엄만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성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8, pp.7~12.

높아 제도금융을 이용하기가 용이하며, 복수인의 자본을 결합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므로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본조달도 가능하다.

넷째, 위험의 분산이다. 복수인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생성된 법인기업은 기업의 위험을 복수인 사이에 분산시키므로 위험이 경감된다. 개인기업에서는 기업가 개인이 기업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단독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위험을 복수인에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분산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섯째, 조세의 절약이다. 현행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일지라도 납부되는 부담세액은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기업활동에 따른 조세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끝으로 노사관계의 원활화이다.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기업의 종업원들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분배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인기업 중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이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기업의 실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경영성과에 따른 배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법인기업의 장점 때문에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절 법인전환의 유형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법인설립시의 출자형태, 법인 전환시의 조세지원수혜여부 및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⁴⁾ 그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세지원의 수혜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조세지원의 수혜여부에 따른 법인전환 방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세지원의 수혜여부에 따른 법인전환 방법

구 분	방 법 명	비 고
1.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방법	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32조
	②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32조
	③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31조
2.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방법	① (일반)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에 규정된 법인전환 방법으로서,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기업주가 지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신설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발기인에 한하여 현물출자가 허용되므로 개인기업주는 반드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4) 어떤 유형의 방법이든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해서 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광의의 사업 양도이어야 한다.

2.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에 규정된 법인전환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입기업주가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법인을 신설하되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한다.

3.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된 법인전환 방법이다. 중소기업간의 기업 통합은 기업상호간의 경쟁제한 배제 등을 통한 시장지배, 생산규모의 적정화, 생산공정의 합리화, 경영합리화, 자본지배 등이 있으나, 중소기업통합의 목적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있는 경우에만 조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중소기업에 의한 개인중소기업의 흡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4.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이는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법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법인전환 방법은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과 기존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법인설립시 현금출자하는 방법과 현물출자하는 방법 모두에 적용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조세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의 법인전환 시에는 현금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기업의 경우와 조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은 일반사업 양도·양수방법을 택하고 있다.

제3절 법인전환 방법과 시기의 선택

1.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전환방법에 따라 많은 비용과 일정이 소요되므로 상기의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형태로 바꾸는 경우에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각 방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환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추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전환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어느 방법이 경제적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전환요건의 검토

전환요건의 검토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

세지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업종에 대한 요건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물류산업 및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⁵⁾ 외에는 조세지원을 배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29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1항)

첫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어야 한다.

둘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⁶⁾ 이상이어야 한다.

2) 경제적인 방법의 검토

경제적인 방법의 검토는 각 방법별로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소요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과 법인전환 소요기간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 4가지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우선 각 방법에서 요구하는 전환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느냐 하

5) 이러한 지식서비스산업은 ① 부가통신업, ② 연구 및 개발업, ③ 방송업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④ 엔지니어링사업, ⑤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말한다.

6) 이는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이 이러한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러한 요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방법의 선택으로 각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단순히 세제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구비요건 유무에 따라서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하는 기준

사 례	전환방법의 선택	이 유
자기의 사업을 가지고 1년 이상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기업의 경우	현물출자방법 또는 세감면 사업 양·수도 방법	업종요건과 사업기간 충족과 자기사업장 소유로 조세지원 실익 있음.
공장을 임차하여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 사업 양도·양수 방법	조세 지원 대상 자산인 부동산이 없기 때문임.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1년 이상 서비스업(지식서비스산업이 아님)을 영위한 경우	일반사업 양도·양수 방법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지식서비스산업 외의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불가 때문임.
남편 소유의 공장에서 부인 명의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방법	남편 소유 공장이 부인의 사업용자산이 아니기 때문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개시한지 1년 미만인 경우	① 단기 : 현물출자방법 ② 장기 :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	제조업을 조세지원 요건인 사업기간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므로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은 불가하나 현물출자방법은 사업기간의 요건 충족이 불필요하므로 법인전환가능
부동산 및 취득세 과세물건이 없는 건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부동산 및 취득세 과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원 대상 세금이 없기 때문임.
중소기업을 넘는 운수업을 자기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	1년 이상 운수업 영위로 조세지원 요건 업종과 사업기간 충족으로 조세지원 선택 실익 있음.
지식서비스산업이 아닌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1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제조업 :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 ② 서비스업 : 일반사업 양도·양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사업장별로 할 수 있으며, 전체사업장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제조업은 조세지원 요건해당으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은 조세지원 요건 해당 없음.
임대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대상업종 아님.
중소기업인 개인제조업과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형태의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 중소기업 통합 방법	제조업이기 때문에 3가지 방법 선택 조세지원 받을 수 있음.
자기소유 공장에 제조업을 1년 이상 경영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2개월 전에 설립한 경우(단, 주식회사는 미개업)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	주식회사는 미개업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통합 조세지원 대상 아니다. 개인기업은 1년 이상으로 요건과 사업기간 충족 : 부동산 소유로 조세지원방법 선택가능. 세감면은 요건 검토하여 결정하고 현물출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전환해야 함.

자료 : 최태규 · 이철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1, pp.330~334.

2.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1) 전략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날 즉, 법인전환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법인전환 기준일은 구체적으로 2002년 12월 31일 등과 같이 연·월·일로 결정되는데, 이 때 연도의 결정을 편의상 전략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월·일의 결정을 기술적 법인전환의 시기의 결정이라 하기로 한다.

법인전환하는 연도 즉, 전략적 법인전환시기의 결정은 장기적 또는 대국적 관점에서의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으로서 앞서 설명한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과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시 고려요소의 하나로 반영되어야 한다.

법인전환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시 법인전환 시기가 적절히 고려되어야만 법인전환의 효과가 발휘된다.

예를 들면 세금부담의 절감을 위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 법인전환 시기는 기업의 매출액 또는 과세표준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만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개인기업보다 작게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소규모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⁷⁾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관련해서도 법인전환 시기는 적절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자산을 법인전환 후 2년

7) 최태규·이철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1, pp.37~39.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정당하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따라서 기업경영의 장기 전망상 이러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시기 또는 법인전환 방법의 결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전략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은 상술한 내용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의 일시 환입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준비금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연도(폐업연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3항) 따라서 이러한 준비금이 많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 소멸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이후 5년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된다.(소득세법 제45조 2항(소득46011-3733, 98.12.2))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소멸되므로 법인전환시기의 결정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2) 전술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전술적 법인전환시기의 결정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월·일의 결정이다. 이 결정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으로서 1년중 어느 달을 기준으로 법인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1년중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월이 모두 법인전환 시기로

가능하며 어떤 제한도 없다. 다만 법인전환 실무상의 편의 등으로 인해 전술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을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부담의 절감과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전술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매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데, 법인전환 시기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마지막 월 즉 매분기말로 일치시키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편리하게 된다.

첫째,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기업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종료할 수 있다.

둘째,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법인전환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여 개인기업의 결산을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결산을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관계확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거래관계 확정을 위한 노력이 다른 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인 매분기말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다음으로 세부담의 절감과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법인전환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전환시기는 가능하면 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으로 잡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움이 된다.

첫째, 기업활동에 따른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차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개인기업을 6월 말일 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2월말일 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비해 기업활동에 따른 세부담을 9,000,000원에서 7,350,000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표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면 <표 3>의 세부담액 산출내역과 같은 차액

을 감소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연도 말은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바쁜 시기이므로 법인 전환과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따라서 법인전환시기는 가능하면 연도 말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세부담액 산출내역

개인기업 과세기간 1년의 소득세	전환기준일 6월말 기준
소득세부담(1.1~12.31) $50,000,000 \times 27\% - \text{누진공제}(4,500,000)$ $= 9,000,000$	소득세부담(1.1~6.30) $25,000,000 \times 18\% - \text{누진공제}(900,000)$ $= 3,600,000$ 법인세부담(7.1~12.31) $25,000,000 \times 15\% = 3,750,000$

제4절 선행연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연구는 법인전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중에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부강의 연구

광부강은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본 후, C섬유회사와 G염색공업사 및 K산업의 3개 회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법인 전환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사례분석에서는 상기

8) 광부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8.

3개 회사에 대하여 법인전환 방법별로 소요경비를 추정하여 법인전환 방법별 효과를 비교하고, 또한 법인전환시점의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법인전환 전후의 세금 절감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3개회사 모두 개인기업일 경우 보다 법인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세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2. 조용래의 연구

조용래⁹⁾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차이를 검토하고,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지원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나의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사례분석연구에서 1996. 9. 30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1개의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인전환 방법별 비용부담액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세금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상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 기업이 1998. 1. 1이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법인전환 방법별(일반사업양도양수,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양도양수)로 조세 등의 비용부담액을 산출함으로써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후자에서는 상기 기업이 법인전환(96. 10. 1) 후 현재까지 개인기업이었을 경우와 법인기업으로 전환 후를 비교하여 세금 절감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사례분석 결과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이 비용부담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전환 후의 조세절감 효과가 개인기업일 경우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조용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

3. 김진영의 연구

김진영¹⁰⁾은 법인전환에 관한 세제의 일반적 고찰을 한 후, 법인전환에 관한 세제와 그 영향을 살펴보고, 법인전환에 대한 하나의 업체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사례연구에서 S산업의 법인전환시 재산가액의 적용방법에 따른 조세등 비용부담액의 비교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후, 실무사례에 의한 감면방식의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

4. 황병욱의 연구

황병욱¹¹⁾은 법인전환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하고, 법인전환의 조세효과를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한 후, 2개의 개인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분석에서는 분석대상 기업이 개인기업이었을 경우(정부의 신고기준에 의한 신고)와 법인기업이었을 경우(실제 법인이 된 이후 및 개인기업이었을 경우 실제소득을 기준)의 세금을 비교한 후,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개인기업 보다 법인기업일 경우 세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조수점의 연구

10) 김진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세제의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2.

11) 황병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

조수점¹²⁾은 법인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를 비교하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사례분석을 시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현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YH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기업이 개인기업일 경우와 법인기업일 경우로 구분하여 세무조정에 의한 소득금액과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부담세액과 가처분소득에 대한 부담세액, 가산세와 소득처분을 비교하고 있다. 분석 결과 법인기업이 개인기업 보다 조세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박옥만의 연구

박옥만¹³⁾은 법인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하고,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제도와 그 영향을 검토한 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법인전환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전환시 조세부담액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1개 내지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경우에 가장 적은가를 살펴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개인기업이었을 경우에 비해 얼마나 세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로 집약되고 있다.

12) 조수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

13) 박옥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2.

제3장 법인전환 절차와 조세지원제도

제1절 법인전환 절차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유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방법,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 일반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이나 세법을 비롯한 각종의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전환방법별로 현행제도상의 전환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¹⁴⁾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에 비해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하기 때문에 자금소요가 적고 조세감면 효과가 큰 반면, 전환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1) 법인전환 해당 사업의 범위

현물출자를 하여 조세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물류산업 및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지식서

14) 여기서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자산 즉,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은 물론이고 소극적 재산인 부채도 포함된다.

비스산업인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은 영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 및 동시행령 제29조 1항)

2) 현물출자 자산의 범위

(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¹⁵⁾ 여기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현물출자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사용한 부동산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는 면제받지 못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 현물출자 가액의 계산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출자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때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계산은 반드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감정관의 감정가액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의 수정금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유형자산 등 감정대상 자산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감정대상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의 수정금액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는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15) 이 경우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되어야 한다.

야 한다.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되는 감정인의 조사와 공증인 조사는 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상법 제299조의 2)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함과 법인설립 등 기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될 수 있다.

3) 신설법인의 자본금

(1)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설립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규모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볼 수 없다.

(2)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신설법인의 자본금 결정기준이 되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기업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주주의 현금 출자와 타 주주의 출자액의 포함도 가능하다.

4) 법인설립 준비

(1) 발기인 구성 및 상호 결정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3인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한다. 개인기업주는 발기인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발기인은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발기인은 대표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296조).

상호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상호에 주식회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업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호를 결정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사전 상호 열람 후 결정해야 한다.

(2) 정관작성 및 공증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일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발기인이 아니면 회사 설립시 현물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기인이 구성되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정관 작성은 감정평가와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가 완료되어 자본금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다.

정관 작성시 유의할 점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요비용을 정관에 창업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창업비를 기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하여 창업비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상법292조에 의하면,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상법 제289조 정관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절대적 기재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며, 반드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290조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 영향은 없으나 법률상 효력은 발생시킬 수 없다.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

주식회사 설립시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등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291조).

한편,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3조).

(5) 주주의 모집 및 배정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면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01조). 주주를 모집하면 주식청약서에 의거 1인 이상의 주주에 대하여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주주의 모집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모집이든,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연고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든 제한은 없다. 주식의 인수청약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배정을 하는데, 이를 주식인수인 또는 청약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04조).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은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303조).

(6) 출자의 이행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 및 모집주주는 인식인수에 대한 주금을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주금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금은 회사설립 이전에는 반환하지 못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7)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상법 제309조).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하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09조).

(8) 감사인의 선임청구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선임된 이사는 현물출자가 상법상 변태설립 사항에 해당되므로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4항). 다만,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 사항 중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보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 및 회사성립후 재산의 양수여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인과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로 감사인의 조사·보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

의 2).

(9) 창립총회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검사인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설립등기를 할 수 있으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총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결의는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결로 한다.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창립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설된 법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¹⁶⁾

5)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의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현물출자 가액의 결정방법, 현물출자 기준일, 현물출자에 대한 교부 주식 수, 종업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 계약의 효력 및 필요한 협조의무사항,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서 작성의 체결시기는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하

16) 전상구, 법인전환절차와 실무, 한국세무경영사, 1998. p.135.

여야 한다.

신설법인의 사업등록 신청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 이전이기 때문이며 실질사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6) 기타 법인전환 절차

(1) 법인설립신고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정양식에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 현물출자 목적물 명세서, 주주 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¹⁷⁾ 이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부가 가치세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11조).

(2)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으로 전환된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현물출자 기준일을 개업일로 7일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현물출자 기준일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과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현물출자 기준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설립등기 전까지는 개인사업자번호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어 현물출자 기준일 이후 자산상태가 계속 변하여 실무처리 어려움이 많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설립 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17) 법인세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2조, 동시행규칙 제74조.

법인설립등기전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¹⁸⁾

(3)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기준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결산을 확정시켜 법인에 현물출자할 자산과 법인에 귀속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이 때 현물출자 기준일의 전날이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이 된다.

결산시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액 수입금액으로 환입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으로 승계가 가능하므로 적절히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기업의 결산은 법인전환기준일 즉, 현물출자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이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기업의 결산자료는 현물출자 가액과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결산이 늦어지면 법인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기업의 결산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개인기업의 결산에 의해 확정된 자산·부채는 신설법인에게 양도·양수되므로 결산시에는 개인기업의 현실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부실채권의 경우는 상각처리하여야 법인세법상 무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기업주에 대한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다.

둘째,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출자금에서 가감시켜야 한다.

18)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 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 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2항, 2002.1.1부터 시행)

19) 최태규·이철호, 전거서, 2001, pp.81~85.

셋째,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폐업이므로 세법상 이연자산은 차기 이후로 이연시킬 사업연도가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결산시 전액 상각·비용처리하여야 한다.

넷째, 퇴직금은 개인기업에서 정산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법인이 승계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퇴직금을 정산 지급할 때 현금지급 곤란할 경우 손금처리하고 미지급으로 계상 처리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는 하여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총당금을 설정하고 개인기업에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다.

다섯째, 미지급 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 후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개인기업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이다.

(4)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결산이 확정되면 폐업일을 현물출자일로 하고, 폐업사유를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하여 폐업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현물출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결산이 지연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먼저 마치고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는 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시에는 폐업사유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소득세에 대한 수시부과를 면할 수 있다.²⁰⁾

20) 소득세법 제82조 1항 :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상태에 있어 소득세의 포탈우려가 있는 경우.

(5) 자산 감정의뢰와 회계감사

개인기업은 결산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명세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가액을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하지 않고 시가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유형자산을 제외한 기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자산감정보고서가 필요하다.

(6) 이월과세 적용신청 및 등록세·취득세 면제 신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의 등록세 면제와 제120조의 취득세 면제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8)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일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의 지원혜택이 많으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계획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법인설립에서 설립등기까지의 진행순서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일정표

순위	내 용
1	발기인 구성(개인기업주 포함 3인이상)
2	발기인대표 및 상호결정(발기인총회개최 및 상호법원열람)
3	현물출자계약 체결 및 공증
4	개인기업의 결산점검 및 준비
5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6	개인기업의 결산정리
7	개인사업자산의 감정 및 회계감사
8	개인사업자의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서 제출
9	현물출자가액 및 교부주식가액 결정(발기인총회)
10	정관작성 및 공증
11	발행주식총수의 인수
12	현물출자자산의 인도 및 주금납입
13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발기인총회)
14	대표이사의 선임
15	감사인선임 신청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법원)
16	법인설립등기 완료
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18	사업용 자산의 명의 이전 및 등기(부동산, 차량)
19	금융기관의 명의 이전
20	인허가사항의 변경 신청(공장등록, 무역업허가 등)
21	세무서 보관서류의 제출

2.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마찬가지로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법인전환이 된다. 다만 국민

주택채권은 전액 매입하여야 한다.

1) 법인전환 해당사업 범위

법인전환 해당사업 범위는 현물출자의 사업범위와 동일하다.

2) 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인기업주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같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전환 절차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실무처리절차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면 된다.

4) 설립법인 자본금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개인기업이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인 순자산평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법상 분할 출자는 불가하며 설립후 증자의 경우는 조세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5)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양도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개인기업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 된다.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체결시기는 신설법인이 설립되고,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후, 그리고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동 계약서가 첨부서류로 필요하며,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시에도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동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기업의 대표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의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시 유의점은, 이 거래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사회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상법 제374조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그 유형을 개인 중소기업과 개인중소기업이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통합,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이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

을 설립하는 신설통합,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되어 법인기업이 존속하는 흡수통합, 그리고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기업이 존속 또는 신설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하여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간의 결합인 합병의 개념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1) 통합 요건

(1) 통합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

부동산업(비주거용 자영건설업 제외)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²¹⁾

- ①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②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²²⁾ 이상일 것.
- ③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1항.

22) 여기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④ 설립 후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의 승계는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²³⁾

(2) 양도대상 사업용고정자산 요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양도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되, 다만 198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판정은 양도일 기준으로 한다.²⁴⁾

(3)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

통합하는 기업이 법인이든 개인기업이든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영화산업, 관광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전문디자인업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²⁵⁾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이어야 한다.(<표 5> 참조)
-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

23) 국세청, (재일 46014-2023, 1999.11.27).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3항 (2002.3.30 신설).

25) 이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
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 한다.²⁶⁾
- ④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
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다.(2002.1.1부터 시행)

<표 5> 중소기업의 범위

해 당 업 종	범위 기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
4.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엔지니 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 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하 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임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 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26) 조세특례제한법 통칙4-2-2 (2002.4.15 개정).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면,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전환 절차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신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하여 통합하는 흡수통합,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신설통합의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법인기업간 통합에 의한 신설통합은 그 유형과 법인전환 절차가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과 유사하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 후 증자시의 현물출자방법이라는 점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과 다르고,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른 조세지원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증자시의 현물출자와 차이가 있다.

(1) 통합방법의 결정

전술한 유형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중 개인기업의 보유자산 형태, 절차상의 어려움 정도, 조세지원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법인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흡수통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2) 중소기업통합계약서 작성

중소기업 통합시는 개인중소기업주와 법인중소기업의 대표가 그 사업

에 관한 자산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가 되도록 하여야 만이,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필요조건이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원을 받는 요건이 된다.

따라서 통합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하여 통합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기는 개인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 변경과 폐업 신고시 동 계약을 첨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기준일 이전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사업자등록 신청과 지점 설치 신고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은 법인전환 기준일로부터 폐업이 되고 그 익일부터는 존속하는 법인기업의 일부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될 수 있도록 법인전환 기준일 7일 이전에 개인사업장에 대한 법인명의로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되면 개인기업의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지점이 되므로 지점 설치에 대한 신고도 동시에 해야 한다.

(4) 기타 법인전환 절차

개인기업의 결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설립준비, 감사인 선임등 신청·조사 현물출자 가액 결정,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자산 감정, 자본금 결정, 폐업신고 등의 절차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절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없다. 다만 모든 법인전환은 실질적인 거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있을 뿐이다. 즉,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²⁷⁾

그러나 정책적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조세지원을 달리 하고 있다. 즉,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조세지원제도 변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법인전환 방법별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지원제도 변천의 주요 내용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1999.1.1일 이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조세감면규제법을 포함하여 조세특례규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 변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표 6>과 같다.

2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시의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표 6> 조세지원제도 변천의 주요 내용

구분	81.12.31이전 (조감법3조의 3)	82.1.1이후 (조감법45조)	83.1.1이후 (조감법45조)	95.1.1이후 (조감법32조)	96.1.1이후 (조감법32조)	98.1.1이후 (조감법32조)	02.1.1이후 (조특법32조)
1. 대상 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소기업 인 거주자	중 소기업인 거주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에 영위하는 거주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물류산업 및 운수업중 여 객운송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
2. 대상 자산	사업용자산	1년이상 사 용한 사업용 자산	좌동	사업용 고정 자 산	좌동	좌동	좌동
3. 신설 법인의 자본금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출자액 의 150%	법인 전환하 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	좌동	좌동	좌동	법인 전환하 는 사업장의 순자산평가 액이상	좌동
4. 법인 전환방 법	설립시 현물출 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세액 면제신 청 또는 이월과 세신청	규정없음	신청하여야 함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자료 : 각 년도 조세감면규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정리함.

2.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전환 방법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전환 방법별로 지원전제요건과 조세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지원 전제요건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조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개인기업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 8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29조부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과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1항).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제조업등 8개 업종과 기타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판정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3항). 그러나 사업의 겸영시 제조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되어 당해 기업 전체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의 조세지원 요건에 적합한 업종인 경우에도 임대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② 거주자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은 거주자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라도 무관하지만 반드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²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은 제외된다.²⁹⁾ 한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모든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³⁰⁾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금을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환된 법인기업은 최소한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액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주의 현금출자 또는 타 주주의 출자액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현재의 시가³¹⁾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³²⁾ 종전에는 장부가

28) 종전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인 경우에만 현물출자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현재 당해 고정자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었다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2항.

30)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항 및 시행령 제29조 4항.

31)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등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동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액으로 평가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에서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개정한 이유는 법인의 자본금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현금 등으로 수수하는 경우 이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순자산가액에 포함 또는 공제여부가 불분명한 자산항목 및 부채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이 많이 나오는 보수적인 해석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실무적으로 특히 검토할 사항을 몇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등의 결산수정사항도 법인전환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에 조정 반영한다.

둘째, 업무상 발생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그 성격에 합당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자산·부채에 포함시킨다.

셋째,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출자금의 인출과 회수로 보고 자산·부채에서 제외시킨다.

넷째, 법인전환시 이연자산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폐업되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상각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폐업되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환입 익금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의 계산을 중요시하는 것은 시가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원에 법정자본금

3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등기를 하여야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현물출자하는 개인기업주는 반드시 받기인이 되어야 한다.

2) 조세지원의 내용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법에 의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등록세의 면제, ③ 취득세 면제, ④ 부가가치세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⑥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미공제 세액의 승계), ⑦ 조세감면승계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기업 소유의 사업용자산중 토지, 건물,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포괄적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라 부가되는 세금인 소득할 주민세도 법인전환시 납부하지 않는다. 또한 감면양도소득세의 20%를 납부하는 농어촌 특별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3항).

(2) 등록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라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한다. 이러한 면제는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명의로의 등기와 등록되어야 할 사업용 자산이어야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도 등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라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 경우에도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이어야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도 취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

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를 받으려고 하면 면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제요건은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자산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이다.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의해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된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는 사업용부동산의 등기시에 한하며,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채권매입금액의 기준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미공제 세액의 승계)

개인기업이 폐업 전에 받은 각종 조세지원혜택은 폐업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이월세액³³⁾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제5조)

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2)

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3)

라.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33) 이러한 이월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을 말한다.

- 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바.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2항)
- 사.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 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 자.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 차.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62조1항)
- 카. 법인본사·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62조2항)
- 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 파.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구조감법 제37조)

위의 각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한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공제한다.

(7) 조세감면 승계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전환 당시의 잔여감면기간까지 감면한다.³⁴⁾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이 잔여감면기간까지 세액을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³⁵⁾

3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64조, 제121조.

35)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내용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세액감면·세액공제

근거	종 류	과 세 방 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발생 최초연도 및 그 후 5년 50%
§7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산출세액의 30%, 20%, 10% 감면
§12조	기술이전소득의 세액감면	소득세액의 50% 감면
§18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면제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간 전액
§63조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3년간 100%, 그 다음 5년 50%
§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발생 최초연도 및 그 후 5년 50%
§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소득 면제
§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3%(중고품 제외) 공제
§10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년간 초과 지출액 50%, 당해 15%
§11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24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5%
§25조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5%
§26조	임시 투자세액 공제	투자금액의 10%
§94조	근로자 복지 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 취득금액의 3%
§122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구입금액 초과

3.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1) 조세지원 전제요건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사업주 외에 다른 발기인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의 사업주가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출자는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의 지원을 받지 못하나, 이 방법은 현물출자법인전환과는 달리 변태설립사항이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만 갖추게 되면 조세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법인설립 자본금 부담과 등기·등록 자산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2) 조세지원의 내용

개인기업이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등록세의 면제, ③ 취득세 면제, ④ 부가가치세 면제, 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미공제 세액의 승계), ⑥ 조세감면승계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기업 소유의 사업용자산인 토지·건물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라 부가되는 세금인 소득할 주민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또한 감면양도소득세의 20%를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세감면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지만, 등록재산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산의 경우에는 등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도 등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용재산에 한정하므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감면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도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미공제 세액의 승계)

개인기업이 폐업 전에 받은 각종 조세지원혜택은 폐업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 있는 개인사업자가 세감면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서와 같이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세액의 범위는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내용과 동일하다.

세감면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액공제액의 이월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한다. 다만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공제한다.

(6) 조세감면 승계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전환당시의 잔여감면기간까지 감면한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신설법인은 잔여감면기간까지 세액을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7) 등록세·취득세의 추정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① 등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와³⁶⁾ ② 등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³⁷⁾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정한다. 다만, ① 당해 신시설(사업용재산)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와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신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³⁸⁾

4.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1) 조세지원 전제요건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조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본금이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②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통합의 목적이 경영합리화에 있어야 한다.

3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4항.

37)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5항.

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 6항.

④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⑤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세지원의 내용

개인기업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등록세의 면제, ③ 취득세 면제, ④ 부가가치세 면제, ⑤ 조세감면 승계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업통합을 위해 개인기업의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통합을 위해 개인기업의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된다. 본 세인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됨에 따라 부과세인 주민세(소득세)도 이월과세됨은 현물출자에 의한 경우와 같으며,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등록세 면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중기 등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등기·등록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통합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같이 동 등록세가 면제되나,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취득세 면제

토지·건물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통합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가 면제되나,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미공제 세액의 승계)

개인기업이 폐업 전에 받은 각종 조세지원혜택은 폐업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 있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서와 같이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세액의 범위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내용과 동일하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액공제액의 이월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한다. 다만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공제한다.

(6) 개인기업 조세감면의 승계

중소기업 통합시 통합 당사 개인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통합 당사자인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으로서 소득세 등의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그 감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이 동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내용을 승계하여 감면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4장 법인전환 효과분석

제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조세제도 차이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공히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과세를 하고자 하는 소득의 개념 차이가 크다. 법인기업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자산증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가 과세소득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소득원천설에 의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순자산증가설을 병용하여 채택하고 있다.

한편 과세소득규정상으로 법인기업에 적용세법은 포괄주의에 의하고 개인기업의 적용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한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차이 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1. 과세소득의 개념에 대한 차이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소득의 발생원천에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순자산증가액을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종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5조 1항).

반면 소득세법은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³⁹⁾하고 있으므로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순자산증가설을 가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과세대상의 차이

법인기업의 과세대상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각사업연도 소득이다. 즉, 각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이익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이 경우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이익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미확정 수익과 비용은 세법상 이익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0조에서는 거래형태별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⁴⁰⁾

소득세법에서는 종합과세를 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계한 후에 세액을 계산하며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각 소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분리

39) 따라서 실현 소득일지라도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40)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1, p.304.

과세되는 소득은 종합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를 하므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3. 과세기간의 차이

개인기업의 과세기간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역년과세에 의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된다. 다만 사망한 경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는 사망일 또는 출국일이 과세기간이 된다.

법인기업의 경우는 사업년도를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로 하고 있으며,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설 법인의 경우 최초사업년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로 본다.

따라서 법인은 선택에 의하여 사업년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개인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4. 세율의 차이

세율은 기업의 조세부담율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이 크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있다.

법인세의 세율은 15%와 27%의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종전에는 법인의 특별부가세가 적용되었으나 200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다만 향후 부동산 투기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

가가 직전전 분기대비 100분의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양도소득은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반면 소득세의 세율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세율의 두 종류가 있다. 기본세율은 최저 9%부터 최고 36%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며,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기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표 8> 법인세율표 (영리법인)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과세표준×15%	0
1억원초과	1천6백만원+ 1억원초과하는금액의×27%	1,200만원

* 2002.1.1부터 시행.

<표 9>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9/100	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100	90만원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700만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100	450만원
8천만원초과	1,900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100	1,170만원

* 2002.1.1부터 시행.

<표 10>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종 전		현 행	
보유기간 2년이상	20%, 30%, 40% 3단계누진세율	보유기간 1년이상	● 1,000만원이하: 9% ● 4,000만원이하: 18% ● 8,000만원이하: 27% ● 8,000만원초과: 36%
보유기간 2년미만	40%단일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	36%단일세율
미등기자산	65%단일세율	미등기자산	60%단일세율

* 2002.1.1부터 시행.

이 밖에도 이월결손금의 차이,⁴¹⁾ 분리과세의 차이,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차이,⁴²⁾ 대표자 인건비 처리의 차이,⁴³⁾ 대손충당금 설정의 차이,⁴⁴⁾ 이연자산 범위의 차이,⁴⁵⁾ 지정기부금에 대한 차이,⁴⁶⁾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차이,⁴⁷⁾

41) 법인세법은 과세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이 어느 소득에서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결손금이 어떤 소득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리방법도 달라진다.

42)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순자산의 증가는 익금에 순자산의 감소는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손익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세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만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3)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에 따른 임원보수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임원 상여금은 과다지급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한도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반면 개인기업에 있어서 대표자는 사업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44) 법인기업의 매출채권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미수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기업의 경우는 정상적인 영업거래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45) 법인세법에서는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창업비, 사채발행비는 이연자산의 범위에 속하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와 주식이나 사채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창업비 및 사채발행비가 없다.

46) 법인세법에서는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된다.

47) 법인세법은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나 소득세법은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자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시부인 차이,⁴⁸⁾ 신규취득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차이,⁴⁹⁾ 일시상각충당금 차이,⁵⁰⁾ 자산수정이익과 채무면제 이익의 차이,⁵¹⁾ 과세표준 신고 납부기한의 차이,⁵²⁾ 중간예납의 차이,⁵³⁾ 대차대조표 공고의 무,⁵⁴⁾ 주주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차이,⁵⁵⁾ 조세의 의한 적출금액의 세금부담 차이,⁵⁶⁾ 기업자금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의 차이,⁵⁷⁾ 기장의무의 차

산상각부인액이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48) 법인세법은 양도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는 시부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상각시부인결과 상각부인액이 나타나는 경우 동금액은 손금불산입합과 동시에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상각시부인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은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대상에 포함한다.
- 49) 법인세법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반년법(사업에 사용한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신규취득자산·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모두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사용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 50)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자산교환차익)을 규정하고 있다.(토지의 재평가차익은 2001.12.31일자로 삭제됨.) 소득세법은 2종의 일시상각충당금(국고보조금·보험차익)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시상각충당금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 51)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수정이익과 채무면제 이익은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한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수정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과 무관할 경우에는 중여세를 과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52) 개인기업은 과세표준신고를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법인기업은 법인세법 제60조1항에서 세액을 각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사업년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53) 개인기업은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기업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자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54) 개인기업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다.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법인의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기업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있다.(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2항)
- 55)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주주는 배당을 받을때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인세와 배당받은 소득세를 합하며 개인기업주의 소득세와 법인의 세부담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본다.
- 56) 개인기업의 세무조사후 적출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이와 관련한 소득세만 추정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법인기업은 조사에 의하여 적출되어 이익이 가산한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

이,⁵⁸⁾ 결손금 소급공제의 차이,⁵⁹⁾ 가산세의 차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제2절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의 비교

이상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은 문헌적 연구를 토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전환 방법별로 조세부담액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1. 분석대상 기업의 현황

아래 분석 대상기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2002. 2월 이전에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해왔으며, 토지 및 건물은 2001. 11월에 취득하여

액이면 법인세에 대한 추정하는 것 외에 적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추징을 한다.

- 57) 개인사업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업주의 개인자금을 해당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으며 대표자 개인이 기업에 투입도니 자금을 사업상 용도로 인출할때에도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으며 인출된 금액이 경비로 처리될지 않는한 특별 세무상의 불이익이 없다. 인출된 금액이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 한 특별세무상의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법인가업의 경우는 법인재산과 개인재산과는 엄격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정과 지급된 자에게는 배당금 또는 상여로 간주하여 그 자금된 다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 58) 법인가업은 수입금액과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에 대한 기장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개인기업의 경우는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인업, 어업, 광업, 수렵업 등은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자 제조, 음식, 숙박, 건설, 전기, 가스, 운수, 창고, 통신금융, 보험 수도사업, 소비자 용품수리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의무자에 대한 기장의무가 있다.
- 59) 개인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사업의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공제받을수 있으며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생연도와 직전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1년간의 소급공제와 5년간의 이월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가업도 개인기업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법에서의 이월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결손금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당해 기업은 2002년 6월 30일을 법인 전환 기준일로 하여 법인전환을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장등록에 관한 환경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법인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에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하나 당해기업은 감정 및 평가가 유보상태에 있으므로 당해 연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과 제자산·부채의 대차대조표 가액을 추정평가액으로 간주하여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1) 회사 개요

- | | |
|------------------------|------------------------|
| (1) 사업장 : 경남 마산시 소재 | (2) 설립연월일 : 1995. 7. 5 |
| (3) 업종 : 종이제품 | (4) 종업원수 : 12명 |
| (5) 부동산취득일 : 2001. 11월 | |

2) 부동산 현황

- | | |
|--------------------------------|---------------------------------|
| (1) 토지면적 : 1,850m ² | (2) 건물면적 : 995.44m ² |
|--------------------------------|---------------------------------|

3) 자산 및 부채 현황

동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는 <표 11>과 같다.

<표 11> HS산업의 대차대조표

2002.6.30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126,097,503	I. 유동부채	376,601,221
(1) 당좌자산	35,317,043	외상매입금	157,326,279
현금	26,320,805	미지급금	167,270,046
외상매출금	5,192,000	예수금	16,350
할부미수금	1,067,798	부가세예수금	31,423,035
부가세대급금	2,736,440	단기차입금	11,265,511
(2) 재고자산	90,780,460	미지급비용	9,300,000
제품	23,519,000	II. 고정부채	600,000,000
원재료	67,261,460	장기차입금	600,000,000
II. 고정자산	1,108,573,349	부채총계	976,601,221
(1) 투자자산	1,750,000	자본	
전신전화가입권	1,750,000	I. 자본금	258,069,631
(2) 유형자산	1,106,823,349	자본총계	258,069,631
토지	117,325,000		
건물	243,151,720		
기계장치	695,999,428		
감가상각누계액	(49,115,428)		
차량운반구	105,381,772		
감가상각누계액	(8,748,136)		
비품	3,488,182		
감가상각누계액	(659,189)		
자산 총계	1,234,670,852	부채와 자본 총계	1,234,670,852

2.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액 산출

법인전환 시에 발생하는 조세는 크게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조세와, 부동산 명의이전에 따른 조세 및 차량등 등록자산의 이전에 따른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반 사업

양도·양수 방법, 현물출자 방법,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따른 조세부담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조세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조세로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12호 및 시행규칙 제54조의 4에 의하여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업체는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 시에 지방세법 제37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액의 4/1000를 등록세로서 납부하면 될 것이다. 한편 법인설립시 사업의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시 작성하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및 정관작성에 관련한 인지세는 2001.12.29 법률개정으로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없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세액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 기업의 경우 출자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현금출자액을 가산한 값이므로 300,000,000원이 되며, 등록세는 1,200,000원($300,000,000 \times 4/1000$)이 되고, 교육세는 240,000원($1,200,000 \times 20\%$)이 된다.

2) 부동산 명의이전에 따른 조세

이에 대한 조세로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민세 및 농특세, 등록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와 농특세, 그리고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특세가 있다.

(1) 양도소득세와 관련 조세

사례 기업은 2001년 11월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추정한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간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와 농특세도 없는 것이다.

(2)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등록세와 관련 조세

부동산의 명의이전 시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30/1000을 등록세로서 납부하여야 하지만,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교육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교육세를 납부하므로 농특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면제되는 등록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 기업에 대한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등록세와 관련 조세를 산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등록세와 관련 조세의 산출

구분	과세표준	일반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 양·수도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토지	117,325,000	3,519,750	703,950	없음	없음	없음	703,950
건물	243,151,720	7,294,551	1,458,910	없음	없음	없음	1,458,910
합계		10,814,301	2,162,860				2,162,860

(3) 부동산 명의이전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조세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20/1000을 취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하지만, 현물출자 및 세감면 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일반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농특세는 취득세 산출세액의 10%이지만,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취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 기업에 대한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취득세와 관련 조세를 산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취득세와 관련 조세의 산출

구분	과세표준	일반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양·수도	
		취득세	농특세	취득세	농특세
토지	117,325,000	2,346,500원	234,650원	없음	469,300원
건물	243,151,720	4,863,034원	486,303원	없음	972,606원
합계		7,209,534원	720,953원		1,441,906원

3) 차량 등록자산의 이전에 따른 조세

이에 대한 조세로는 등록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와 농특세, 그리고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특세가 있다.

(1) 차량등록분 등록세와 관련 조세

등록자산인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영업용 차량 등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3%와 비영업용 차량 등록에 대하여는 5%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교육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교육세를 부담하므로 등록세 과세로 인한 농특세가 없지만,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 기업의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관련 조세를 산출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관련 조세의 산출

구분	과세표준	일반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 양·수도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영업용	54,200,901	1,626,027	325,205	없음	없음	없음	325,205
비영업용	38,432,727	1,921,636	384,327	없음	1,921,636	384,327	없음
합계		3,547,663	709,532		1,921,636	384,327	325,205

(2) 차량등록분 취득세와 관련 조세

일반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모든 차량 등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취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부담해야 하지만,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 기업의 차량등록분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조세를 산출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차량 등록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조세의 산출

구분	과세표준	일반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물출자 및 세감면사업 양·수도	
		취득세	농특세	취득세	농특세
영업용	54,200,901	1,084,018원	108,402원	없음	216,804원
비영업용	38,432,727	768,654원	76,865원	768,654원	76,865원
합계		1,852,672원	185,267원	768,654원	293,669원

3.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 비교 분석

이상에서와 같은 산출 결과를 가지고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액을 비교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액 비교

구분	법인전환유형	일반사업	현물출자방법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방법		양도·양수방법
법인설립등기시 조세	등록세	1,200,000	1,200,000	1,200,000
	등록세분교육세	240,000	240,000	240,000
	소 계	1,440,000	1,440,000	1,440,000
부동산 명의이전시 조세	양도소득세	0	0	0
	양도소득세분주민세	0	0	0
	양도소득세분농특세	0	0	0
	등록세	10,814,301	0	0
	등록세분교육세	2,162,860	0	0
	등록세분농특세	0	2,162,860	2,162,860
	취득세	7,209,534	0	0
	취득세분농특세	720,953	1,441,906	1,441,906
	소 계	20,907,648	3,604,766	3,604,766
	등록세	3,547,663	1,921,636	1,921,636
차량등록자산 이전 조세	등록세분교육세	709,532	384,327	384,327
	등록세분농특세	0	325,205	325,205
	취득세	1,852,672	768,654	768,654
	취득세분농특세	185,267	293,669	293,669
	소 계	6,295,134	3,693,491	3,693,491
	합 계	28,642,782	8,738,257	8,738,257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액을 비교한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의 부담액은 28,642,782원으로 현물출자 방법이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의 8,846,857원에 비하여 조세부담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법인설립등기시 조세와 부동산 명의이전시 조세, 차량등 등록자산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구분하면 법인설립등기시 조세는 법인전환 방

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조세부담액을 보면,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방법은 조세의 지원이 전혀없는 관계로 현물출자 방법이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비해 17,302,882원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총 조세차액(19,904,525원)의 87%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세부담이 부동산 명의이전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량등 등록자산에 대한 명의이전시의 조세부담액도 일반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의 세부담이 현물출자 방법이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비해 2,601,643원 만큼 조세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요비용 측면에서는 사례 기업의 경우에는 자산감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및 회계감사 수수료의 비용부담은 없으나, 출자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따를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볼 때, 소유부동산이 많은 개인기업일수록 현물출자 방법이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일반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보다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감정평가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의 추가적인 소요비용의 부담이 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는 매입면제를 하고 있으나, 당해 기업의 현황에 의하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현물

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지원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현물출자와 동일한 조세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요비용 측면에서 보면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현물출자 법인전환과는 달리 자산의 감정이나 회계감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필수적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비용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는 달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은 경영일정과 각종 요소를 고려한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비교하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법인전환 후 세금절감 효과분석

여기서는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두 개의 회사를 사례로 하여 이들의 2002년 귀속소득을 가지고, 양회사가 개인기업이었을 경우와 법인기업일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여 법인전환 후의 세금절감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1. 사례 1

회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1) 사업장 : 경남 김해시 소재
- (2) 업종 : 제조(자동차부품)
- (3) 대표이사 부양가족 : 배우자

(4) 대표자 주식소유 : 100%

(5) 자본금 : 5천만원

<표 17> 사례 1의 세금부담 비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비 고
① 총수입금액	1,315,689,442	1,315,689,442	
② 필요경비	1,235,037,951	1,235,037,951	
③ 소득공제	2,000,000	-	주1)
④ 대표이사 급여		14,500,000	주2)
⑤ 과세표준	78,651,491	66,151,491	
⑥ 세율	27%	15%	주3)
⑦ 누진공제	4,500,000	-	
⑧ 산출세액	16,735,902	9,922,723	주4)
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020,770	2,976,816	주5)
⑩ 결정세액	11,715,132	6,945,907	⑧-⑨
⑪ 소득할증민세	1,171,513	694,590	주6)
⑫ 부담세액	12,886,645	7,640,497	⑩+⑪
⑬ 대표이사배당			무배당
⑭ 대표이사종합소득금액		14,500,000	
⑮ 소득공제(대표이사)		2,000,000	주1)과 동일
⑯ 근로소득공제(대표이사)		9,275,000	주7)
⑰ 특별공제(대표이사)		1,100,000	주8)
⑱ 종합소득세과세표준(대표이사)		2,125,000	⑭-⑮-⑯-⑰
⑲ 세율(대표이사)		9%	주3)
⑳ 누진공제(대표이사)		-	
㉑ 산출세액(대표이사)		191,250	주9)
㉒ 배당세액공제(대표이사)		-	
㉓ 근로세액공제(대표이사)		86,062	주10)
㉔ 결정세액(대표이사)		105,188	㉑-㉓
㉕ 소득할증민세(대표이사)		10,518	주6)
㉖ 부담세액(대표이사)		115,706	㉔+㉕
㉗ 법인 및 개인 부담세액 합계	12,886,645	7,756,203	⑫+㉖

주1) 개인기업일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기초공제 1,000,000원과 배우자 공제 1,000,000원으로 합계 2,000,000원 이다.

주2) 개인기업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기업과 달리 대표이사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 주3)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4) 소득세 산출세액(2002.1.1부터 적용)은 16,735,902원($78,651,491 \times 27\% - 4,500,000$)이며, 법인세 산출세액(2002.1.1부터 적용)은 9,922,723원($66,151,491 \times 15\%$)이다.
- 주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수도권, 수도권외)과 업태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고 있다. 사례 기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산출세액의 30%가 감면된다.
- 주6)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이다.
- 주7)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8) 특별공제는 표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이 다.
- 주9)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10)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2. 사례 2

회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1) 업태 : 제조, 종목 : 선박부품
- (2) 법인전환일자 : 1995. 6. 10
- (3) 법인자본금 : 3억원
- (4) 대표이사 주식소유 : 100%
- (5) 잉여금 처분일 : 2001. 3. 1
- (6) 배당소득 : 5천만원
- (7) 대표이사 부양가족 : 배우자

<표 18> 사례 2의 세금부담 비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비 고
①	총수입금액	5,769,590,210	5,769,590,210	
②	필요경비	5,132,171,487	5,132,171,487	
③	소득공제	2,000,000	0	주1)
④	대표이사급여		27,995,000	주2)
⑤	과세표준	635,418,723	609,423,723	
⑥	세율	36%	27%	주3)
⑦	누진공제	11,700,000	12,000,000	
⑧	산출세액	217,050,740	152,544,405	주4)
⑨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65,115,222	45,763,321	주5)
⑩	결정세액	151,935,518	106,781,084	⑧-⑨
⑪	소득할주민세	15,193,551	10,678,108	주6)
⑫	부담세액	167,129,069	117,459,192	⑩+⑪
⑬	대표이사배당		50,000,000	
⑭	대표이사 종합소득금액		77,995,000	④+⑬
⑮	소득공제(대표이사)		2,000,000	주1)과 동일
⑯	근로소득공제(대표이사)		11,449,250	주7)
⑰	특별공제(대표이사)		1,100,000	주8)
⑱	종합소득세과세표준(대표이사)		63,445,750	⑭-⑮-⑯-⑰
⑲	세율		27%	주3)
⑳	누진공제(대표이사)		4,500,000	<표4-3>참조
㉑	산출세액(대표이사)		12,630,352	주9)
㉒	배당세액공제(대표이사)		9,500,000	주10)
㉓	근로세액공제(대표이사)		400,000	주11)
㉔	결정세액(대표이사)		2,730,352	㉑-㉒-㉓
㉕	소득할주민세(대표이사)		273,035	주6)
㉖	부담세액(대표이사)		3,003,387	㉔+㉕
㉗	법인 및 개인의 부담세액 합계	167,129,069	120,462,579	⑫+㉖

주1) 개인기업일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기초공제 1,000,000원과 배우자 공제 1,000,000원으로 합계 2,000,000원 이다.

주2) 개인기업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기업과 달리 대표이사 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주3)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주4) 2002.1.1부터 적용하는 소득세 산출세액은 217,050,740원($635,418,723 \times 36\% - 11,700,000$)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은 152,544,405원($609,423,723 \times 27\% - 12,000,000$) 이다.

주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수도권, 수도권외)과 업태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고 있다. 사례 기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산출세액의 30%가 감면된다.

주6)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이다.

주7)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주8) 특별공제는 표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이 다.

주9)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주10)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함.

주11)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이상과 같은 사례연구에 의하면, 기업 규모가 적은 사례1의 경우는 개인기업으로 존속하였을 경우 세부담액이 12,886,645원인 반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담액이 5,130,443원 감소하여 7,756,203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규모가 큰 사례2의 경우에는 개인기업으로 존속하였을 경우의 세부담액은 167,129,069원인 반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담액이 120,462,579원으로 46,666,49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과 사례2를 볼 때, 규모가 클수록 조세부담액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세절감효과를 비율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적은 사례1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액이 개인기업이었을 경우에 비해 40% 감소한 반면, 기업 규모가 큰 사례2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액이 개인기업이었을 경우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후 세부담과 개인기업으로 계속 존속하였을 때의 세부담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법인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세절감효과는 절대액 측면에

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지만, 절감비율 측면에서는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5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제4장의 법인전환 효과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법인전환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조세지원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1절 법인전환 효과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인전환 효과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

사례분석에서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부담액을 산출할 경우 부동산 명의이전시의 조세를 보면, 양도소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주세원이 없으므로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는 일반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경우 취득세의 10%이지만, 현물출자방법이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부과함으로써, 전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현상은 차량등록 자산의 이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조세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효과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먼저 일반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할 경우의 취득세부과분 농특세에 비하여 현물출자방법이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에 대한 취득세부과분 농특세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도 양도소득세나 등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처럼 주세원이 없으므로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농특세의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조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면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에서는 사업용재산인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용재산이라면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조세지원제도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지원제도 활용상의 문제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지원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24.4%로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주로 “세정지원제도의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⁰⁾

60) 김종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12, p.56 재인용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들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을 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33.1%가 조세지원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9> 참조)

<표 19>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구 분	비 율
○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3.1%
○ 가끔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편이다.	39.8%
○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20.6%
○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6.5%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8. 8, p.117.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3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0>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부진 이유

구 분	비 율
○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혜택이 없었다	41.1%
○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했다.	34.4%
○ 감면요건 및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였다.	17.5%
○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활용의 필요성이 없었다.	6.7%
○ 기타	0.3%

자료 : 상동, p.117.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법인전환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도 전환방법을 잘못 선택하였거나 사전에 충분한 요건의 검토없이 법인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당한 이해 아래 의사결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조세지원제도 활용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법인기업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가 되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전환에 대해 정부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여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잘 몰라서 입게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에서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인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개인사업주의 재고재화인 원재료, 제품, 상표 등이 적정하게 출자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현물출자시 재고량은 장부에 의존함으로써 재고재화에 대한 분식회계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법에서 요구하는 법인자본의 충실이 저해되며 법인기업의 매출누락으로 개인기업주의 부당이득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제3절 법인전환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절차상의 문제점

개인중소기업주가 기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표 21>와 같다.

<표 21> 법인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를 느낀 사항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절차복잡, 구비서류과다	40.0%	퇴직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담	4.2%
금융상 명의 변경 절차의 복잡	19.3%	소요기간길다	3.6%
조세부담	15.5%	절차를 모른다.	3.4%
각종수수료	14.0%		
계			100%

자료 : 상동.

이를 보면, 절차의 복잡과 구비서류의 과다로 인하여 가장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상 명의변경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조세와 각종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개인기업의 경영조직이 전환업무에 전력 투입되어야 만이 기업경영과 법인전환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이상에서와 같이 개인기업을 법인가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주된 문제점은 절차의 복잡성과 조세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인 것이다.

61) 임판성, 전계논문, p.63 재인용.

2. 법인전환 절차의 개선방안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간단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상법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검사인 선임신청에 관하여 1996.10.1일부터 변태설립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상법 제290조의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하고, 제2호에서는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제3호에서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법 개정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295조),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 2)라고 개정되었다.

둘째,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기업을 분리되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영혁신이라고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의 경영상 특성은 인적 내지는 사적경영으로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현상이 두드러져 있다.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기업을 분리되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영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나 감시·감독보다는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관서의 전문적인 지도요원을 상주시켜 업무지원을 하여 법인전환 절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

선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의 재평가에 대한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재평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사업용자산 중 토지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개별공시지가 수준이 실거래가액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고, 건물의 경우에도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된 제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촉진시키는 조세지원제도를 내용을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인전환방법에 대한 조세효과를 검토한 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촉진시키는 조세지원제도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법에 의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등록세의 면제, ③ 취득세 면제, ④ 부가가치세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⑥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미공제 세액의 승계), ⑦ 조세감면승계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개인기업이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등록세의 면제, ③ 취득세 면제, ④ 부가가치세 면제, 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미공제 세액의 승계), ⑥ 조세감면승계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개인기업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등록세의 면제, ③ 취득세 면제, ④ 부가가치세 면제, ⑤ 조세감면 승계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문헌적 연구를 토대로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의 부담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법인전환 후의 세금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의 부담액에 비해 현물출자 방법이나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조세부담

액이 현저히 적다. 따라서 부동산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비교하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두 개의 회사를 사례로 하여 법인전환 후의 세금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절감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특세의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명의이전과 차량등록에 대한 농특세가 일반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경우 보다 더 많게 되므로, 농특세의 세율을 10%로 인하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면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소형승용자동차 등으로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주된 문제점은 절차의 복잡성과 조세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환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간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해 정부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여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잘 몰라

서 입게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을 분리되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영혁신이라고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동산의 평가에 대한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 사업용자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그리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제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법인전환 효과분석에서 사례분석대상 기업의 수가 적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법인기업으로 전환은 기업의 소유하고 있는 자산 상태라든지 성장 규모에 따라 사례에서 예시한 장점도 있으면서, 반면에 불리한 점도 있을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조세부담 측면만 고려하였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법인전환 후 세금절감 효과분석에서 배당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였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관련 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배당성향을 고려할 경우 실효세 부담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조세 이외의 측면에서 법인전환 효과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논문>

- 1) 광부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8.
- 2) 김종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12.
- 3) 김진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세제의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12.
- 4) 박옥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12.
- 5) 엄만성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성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6.
- 6) 조수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6.
- 7) 조용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12.
- 8) 황병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6.

<국내저서>

- 1) 박영사, 경제학대사전, 1980. 2.
- 2)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1.
- 3) 전상구, 법인전환절차와 실무, 한국세무경영사, 1998.
-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8. 8.

5) 최명근, 법인세법, 세경사, 1998.

6) 최태규·이철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한국재정 경제연구소, 2001.

<각종 법률>

- 1) 법인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2) 부가가치세법 및 동시행령
- 3) 상법
- 4) 소득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 6)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 8) 지방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 사 의 글

만학의 결실을 맺기까지 연구와 강의에 바쁘신 가운데도 세심하게 지도를 해주신 박영병 교수님과 평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어 배려해주신 김태용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정리과정에서 컴퓨터작업에 익숙하지 못한 아버지를 도와 직장생활에 쫓기면서 정리작업을 마무리지어준 큰딸에게 그동안 고맙고 수고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으며, 함께 잠 못 들며 건강을 지켜준 아내에게 특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석사학위논문을 완성하면서 역시 만학의 길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도 보람만은 컸다는 생각을 한다.

저의 논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영자 및 실무자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3년 1월

김 종 명